

# Tax News Flash

## - Transfer Pricing & Customs

April 24, 2023

Samjong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1 이전가격

#### 룩셈부르크: APA 및 MAP 절차,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 국세법 개정안 입법

룩셈부르크 재무부는 법안 8186,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및 상호합의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이전가격 문서화 필수 요건 및 국세법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 APA 및 MAP

쌍방 및 다자간 APA 절차 관련 개정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룩셈부르크 국세청(Luxembourg Direct Tax Authorities, LTA) 국장 또는 대리인에게 쌍방 및 다자간 APA 신청서 서면 제출
- 룩셈부르크와 계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상 절차에 따라 쌍방 및 다자간 APA 체결
- 쌍방 및 다자간 APA의 복잡성과 신청절차에 따라 10,000 유로에서 20,000 유로 신청 수수료 부과

MAP 와 관련하여 조세조약 또는 MAP 절차에 따라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상시 검토하거나 취소, 수정 가능

## 이전가격 보고서

법안 8186 은 OECD 이전가격 지침서에 따른 이전가격 보고서 규정을 포함하며, 이는 2024 사업연도부터 룩셈부르크 소재 기업에 해당됩니다 .

- LTA 제출 요청 시 납세자는 이전가격 보고서를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출 의무
- 국가별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 CbCR) 규정에 따라 LTA가 제출 요청 시 납세자 및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은 이전가격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의무
- 매출액 1억 유로 또는 자산 4억 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나 고정사업장은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의무

## 국세법

법안 8186 은 국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연간 세무신고 (2024 사업연도부터 적용)
- 세금 납부
- 과세당국 및 규제기관 간의 협력 강화
- 세금 환급
- 소득 조정 평가를 포함한 세금 환급(2024 사업연도부터 적용)
- 법원 불복 신청 기한

상기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아직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2 부 7135, 2023.02.14

제목: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작업지시서, 설계요청서 등에 따르면 기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단순 기능들을 추가하여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출시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1) 처분개요

- 청구법인(000)은 2014년 6월에 설립되어 000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5월 000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았고, 2017 ~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원 인건비와 재료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000과 같이 2017 ~ 2018사업연도는 합계 000원의 제품 디자인 위탁개발비용과 2019사업연도는 제품 시제품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000원(제품의 디자인 위탁개발비용과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세액공제 대상에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기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2.2.28. 제기하였음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비용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11호<sup>1</sup>를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2.4.29.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2.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쟁점

청구법인이 지출한 디자인 위탁개발비 및 외주가공비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청구법인 및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p>1) 디자인의 외주 위탁 활동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며, 조특법 시행령 제 8 조에서 열거한 제외되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에 해당함</p> <p>- 청구법인은 외주개발 위탁 시 청구법인이 원하는 000 정도의 규격을 맞추기 위한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 생산품이 큰 기술력 없이 제작이 가능하여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을 선도하여, 000 등 해외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u>제품의 핵심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에 있기 때문임</u></p> <p>- <u>쟁점비용은 설계 과정에 필요한 디자인에 대하여 위탁개발한 것으로 공학적인 연구활동도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됨</u></p>	<p>1) 연구 개발활동이 부적합하며 연구 활동에 대한 추가 소명이 확인되지 않기에 <u>상품개발에 지출된 쟁점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u></p> <p>-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개발 보고서의 목표 및 제품 디자인, 외형에 대한 기능들은 기능적 확대 또는 기존 기능의 용량 확장이나, 시장요구 반영 등 단순 제품 수정으로 이는 과학적·기술적 진보와 관련 없음</p> <p>- 000기반 기능 업데이트로 배터리 용량 증대, 단순 제품 수정, 요구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제품디자인과 회로 디자인의 기술력을 갖춘 외주업체를 이용하는 활동이 반복되는 것은 판매 제품에 심미성과 시장에서 유통되고 요구되는 단순 기능들을 추가하여 업그레이드한 상품을 출시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어 <u>연구개발활동에 부합하지 않음</u></p> <p>- 제품 및 회로 계약서를 볼 때, <u>모든 책임과 비용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용역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불한 후 모든 소유권과</u></p>
<p>2)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는 <u>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함</u></p> <p>- <u>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고유성 및 독창성을 통하여 과학적·기술적 진전이 있었는지 여부를</u></p>	

<sup>1</sup>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조특법 시행령 제 1 조의 2【정의】참고)을 제외한다.

<p><u>보아 판단(조심 2017서262, 2018.9.5., 2017서4669, 2018.1.31. 등 외 다수)하여야 함</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조특법 기본통칙 10-9...1 제4항에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 등을 포함”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6, 2011.10.28.)에서는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u></li> <li>- <u>청구법인의 배터리는 동일한 용량을 담지만 소형화, 경량화를 위한 디자인 및 회로설계를 하였고, ○○○는 작지만 강한 ○○○을 유지하되, 소음은 최소화하는 디자인 설계 용역인바, 단순 디자인 변경과는 차이가 있으며 발열량 체크, 배터리 누수 최소화를 위한 회로 설계, 소형화를 유지한 채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과학적 기술이 뒷받침되는 디자인 개발임</u></li> </ul>	<p><u>저작권을 가지게 됨</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해당 연구가 위탁개발용역이지만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계획, 목표설정, 자금투입계획 등 준비단계가 요구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활동이 확인되지 않아 연구개발의 체계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u></li> <li>- <u>청구법인이 경쟁청구기간(2017년 ~ 2019년)에 진행된 과제들은 상품 개발 활동으로 확인되며, 과학적·기술적 진전(조특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충족되지 않아 연구개발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부적합함</u></li> </ul>
<p><b>3) 시제품 외주가공비는 연구개발비에 포함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에서는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u></li> <li>- <u>조세심판원은 연구개발 활동이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판단(조심 2018구2633, 2019.6.26.)하였으며, 국세청 예규(법인세-202, 2010.3.8.)에서도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금형비 포함)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음</u></li> <li>- <u>청구법인은 제품 개발에서 디자인 시안이 결정되면 금형 혹은 목업(mock-up)을 제작하고 있고, 해당 제품은 청구법인이 원하는 규격·사양 등이 적합한지를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시제품으로 양산 제품 및 금형과는 명확히 구분됨. 따라서 시제품 외주가공비가 설령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므로</u></li> </ul>	

#### 4)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외부업체에 설계비용 및 디자인개발 등으로 지급한 대가인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미 상용화·사업화된 기술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다소 보완 또는 변형함으로써 약간의 효율성이나 편리함을 더하였다거나, 특정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정도의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과 획기적인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이어야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7.7.13. 선고, 2016구합56905 판결)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작업지시서, 설계요청서 등에 의하면 기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단순 기능들을 추가하여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출시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해 보이는 점(조심 2018전2445, 2018.10.2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의 기술 검토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개발 보고서의 목표 및 제품 디자인, 외형에 대한 기능들은 기능적 확대 또는 기존 기능의 용량 확장이나, 시장요구 반영 등 단순 제품 수정으로 이는 과학적·기술적 진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단순 제품 수정이 ○○○으로 이어지며, 요구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제품디자인과 회로 디자인의 기술력을 갖춘 외부업체를 이용하는 활동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휴대용 배터리 외 ○○○에 대한 제품 개발에서도 이러한 활동 반복적임),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 건수 중 특허출원 신청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내용과 쟁점비용 지출이 연관되었다는 여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03 관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2 관 0034, 2023.02.02

제목: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마친 후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조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기업("AEO")으로 BBB계열사인 HHH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음.
- BBB는 제조법인과 판매법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재판매가격법에 의해 설정하는 것을 기초로 매년 목표 영업이익율과 실제 영업이익율을 비교하여 목표 영업이익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송금 또는 수령하는 사후보상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 2019.1.13부터 2020.12.4 AAA("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쟁점물품과 관련된 목표 영업이익 초과분에 대해 2021. 1.15 CCC에 송금한 후, 2021.9.14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부가세, 가산세 등을 수정 신고 하였음.
- 이후 청구법인은 2021.9.27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13 거부함에 따라 2022.1.7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쟁점

- 사후보상조정에 따른 송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3) 조세심판원 판단

-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점에 사후보상조정액을 확정하여 정확하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 사후보상조정액과 관련한 AM의 정보제공에 대응하여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는 등으로 성실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점에 사후보상조정액을 확정하여 정확한 과세가격을 신고할 수 없었던 것은 BBB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ACVA 승인을 받지 못해 잠정가격신고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는 것도 청구법인이 BBB 본사 등으로부터 관련 상세자료 등을 수취하지 못한 내부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은 2017년도에 본-지사간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가격신고절차와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실시하였고 2019년도에는 "특수관계자간 사후보상조정 금액의 처리 지침"을 통해 사후보상조정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점, 청구법인이 사후보상조정액과 관련한 AM의 정보제공에 대응하여 자진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이 신고 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

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KPMG 의견]

사후보상조정과 관련하여서는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ACVA)를 통해 가산세 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관련하여 과세가격 사전심사 승인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ACVA 신청 전 수입 통관 건에 대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ACVA 결과에 따라 잠정/확정 제도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다만, ACVA 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한 일반 수정신고 시 현행 관세법 상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가산세 감면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청구법인은 AEO 기업으로 세관 AM 정보제공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성실납세의무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없지만, 매년 발생하는 사후보상조정이 존재하므로 향후 가산세 감면을 위해 ACVA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Key Contacts

###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 02-2112-7448

[home.kpmg/socialmedia](https://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https://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